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88. 5.14.	조례 제1625호
일부개정	1992. 5. 1.	조례 제1982호
일부개정	1995. 2.17.	조례 제2183호
일부개정	2000. 5.17.	조례 제2590호
일부개정	2006. 5.12.	조례 제2919호
일부개정	2008. 1.11.	조례 제3063호
일부개정	2013. 3.29.	조례 제35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5.17., 2006.5.12., 2008.1.11., 2013.3.29.>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충청북도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2.17., 2000.5.17., 2013.3.29.>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도의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1995.2.17., 2013.3.29.>

② 의장이 위원으로 추천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2.17., 2013.3.29.>

③ 도의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개정 2006.5.12., 2008.1.11., 2013.3.29.>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0.5.17., 2013.3.29.>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3.29.>

② 도 및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5.2.17., 2013.3.29.>

[제목개정 2013.3.29.]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 대표위원 1명을 두되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3.29.>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도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9.>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사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하고 필요시 위원은 이를 재검할 수 있다.

<개정 1995.2.17., 2006.5.12., 2013.3.29.>

제8조(검사협조) 도지사, 교육감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설명 또는 사업현장 확인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5.2.17., 2013.3.29.>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11., 2013.3.29.>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5.2.17., 2000.5.17., 2006.5.12., 2008.1.11., 2013.3.29.>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한다.

<개정 1995.2.17., 2000.5.17., 2008.1.11., 2013.3.29.>

[제목개정 2013.3.29.]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 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도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5.17., 2008.1.11., 2013.3.29.>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3.3.29.>

[제목개정 2013.3.29.]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5.17., 2006.5.12., 2008.1.11., 2013.3.2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8.5.18.)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200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1995.2.17., 2013.3.29.>

<p>위 축 장</p> <p style="text-align: right;">○ ○ ○</p> <p>귀하를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회계연도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충 청 북 도 도 의 회 의 장 (인)</p>

[별표 2] <개정 1995.2.17., 2000.5.17., 2006.5.12., 2008.1.11., 2013.3.29.>

구 분	액 수
일 비	130,000원/1일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상 제1호 상당액